

추가 공제항목 제출서류

- 자연재난 :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

① 피해사실 확인서 (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)

[illegible]210mm×297mm[백상지 80g/ m²]

② 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 (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[별지 제3호 서식])

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

업 체 명				대표자		
사업자 등록번호				주 소		
전 화 (FAX)				주생산물		
매출액 (천 원)				재해종류	ex) 태풍, 지진 등	
피해금액 (천 원)	건축물	기계시설	완제품	원자재	기타	합계
	용자 및 용자금액은 용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용자(보증)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					

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○ ○ ○ (직 인)

읍장·면장·동장

○ 사회재난 :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

피해사실 확인서 (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[별지 제2호서식])

**피해사실 [] 확인신청서
[] 확인서**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발급번호 : 제 호		접수일시	처리기간
피 해 자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	
피 해 내 용	대상	단위	
	피해 규모	재난의 종류	
	피해물의 소재지	피해 일시	
용 도			
제출처			

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위 사실을 확인함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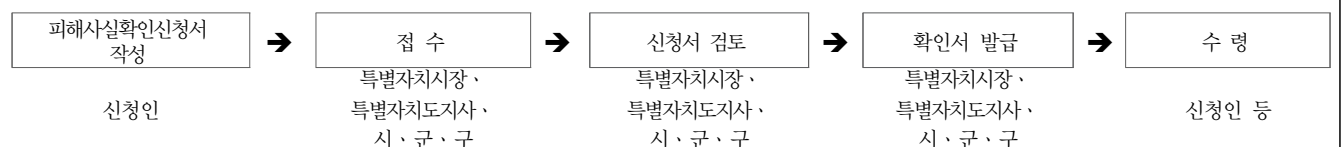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1.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2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(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·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.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)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.
3.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.
※ 예 : ○○군 → ○○-00001
4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㎡]